

## 학생지도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69조에 의거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생들의 학내·외 생활지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학생지도에 관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4.3.1.)

1.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운영·지도에 관한 제반사항
2. 전체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제반사항
3. 학생단체(동아리)의 등록과 활동에 관한 사항
4.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학생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생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7. 교내게시물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학생처장, 학생·장학봉사팀장의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위촉하는 단과대학별 1인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3.21.,2017.10.1.,**2022.4.1.**)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간사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소관업무 부서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③ (삭제 2017.3.21.)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4.3.1.)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학생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04.3.1.)

④ 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처 학생·장학봉사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1.4.18.,

2012.8.1., 2014.3.28.,2017.10.1.,2022.4.1.)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보칙) 본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본 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6조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